

2023년 안광학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역특화산업 안광학 관련 기업의 청년인력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기업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2023년도 「안광학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구지역 소재 안광학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6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안광학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 제공) 지역 청년에 지역특화 분야(안광학산업) 정규직 취업기회 제공으로 지역정착 유도 및 특화산업 활력 제고
 - (산업구조 전환) 제조기능 위주의 지역 안광학산업에 청년일 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디지털化 · 브랜드化 · 혁신化 추진
 - (지속가능 경쟁력 확보) 특화산업 취업 청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 컨설팅을 통해 산업 핵심인력으로 육성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대구시 소재 안광학 관련 기업
 - ※ 「2. 자격요건」 참조
- 지원기간 : 참여기업 협약체결일 ~ 2023. 12. 31.(최대 12개월간)
 - ※ 예산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사전 공지 예정)
 - ※ '23. 1. 1. 이후 채용자에 한해 '23. 3. 1.부로 소급적용 가능
- 지원규모 : 신규 청년인력 3명

□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 역량강화교육지원

- 신규 청년인력 채용 시 최대 1인당 월간 200만원 인건비 지원

※ 보조금 1인당 160만원, 기업부담금 1인당 월간 40만원 이상

※ 신규 청년인력 임금은 1인당 연 2,413만원 이상('23년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함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기타 실비보상적 수당, 성과금 등은 별도))

※ 단,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기간 종료 또는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단, 사업기간 및 예산범위 내 지원

- 기업 당 최대 2명 지원(참여기업 심사에 따라 지원)

※ 기존 2022년 안광학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인력 포함

(예시)

- (1) 2022년 지원이력이 없는 기업 : **청년 2명 추가지원 가능**
- (2) 본 사업으로 청년 1명 지원받는 기업 : **청년 1명 추가지원 가능**
- (3) 본 사업으로 청년 2명 지원받는 기업 : **추가지원 불가**

2. 자격요건

□ 신청기업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대구시 소재 안광학 관련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또는 종목이 안광학 산업군에 포함된 업체

** 품목 : 안경테, 선글라스, 안경크리너, 안경케이스, 콘택트렌즈, 안경렌즈, 광학기기 등

○ 창업 3년 이상(결산 2회 이상) 기업 ※ '20년, '21년 매출액 증빙가능 기업

○ 공고일 1개월 이내 채용예정인 기업

○ 지원제외 : 별첨 3 「참여기업 제외 대상」 참조

□ 지원인력(청년인력) 자격요건

○ 연 령 : 2023. 01. 01. 기준 만39세 이하

○ 고용상태 :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지역요건 : 대구시 거주자 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 대구시 전입 예정자

○ 채용형태 : 해당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지원제외 : 별첨 4 「참여인력 제외 대상」 참조

○ 직무내용

- (홍 보) K-아이웨어 브랜딩 전략 수립 및 온라인 홍보 · 마케팅
- (온라인화) 안경 및 선글라스 브랜드 오픈마켓 · 종합몰 운영
- (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R&D기획, 특허분석, 안경 및 선글라스 디자인 등)

※ **자격요건(우대사항)** * 홍보, 온라인화, 연구개발 분야별 요건 상이

- ▶ 홍보업무 경력자, 문서프로그램(PPT, Word, Excel 등) 사용이 능숙한 자
- ▶ illustrator/photoshop 프로그램 사용자(전공무관)
- ▶ 온라인 MD 경력자, 오픈마켓 등 마케팅 경험자, 사진 및 영상편집가능자

3. 지원절차



4. 선정방법

□ 기업선정 : 서류심사

○ 서류심사 방법

1) 선정기준 : 심사표에 의한 서류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지원예산에 따라 우선참여기업, 예비참여기업으로 구분선정

2) 심사방법 : 위원회 구성(5명 내외) 후 항목별 심사

3) 심사배점 : 총 100점(정량평가 40점 + 정성평가 60점) ± 가산(감)점

※ 가산(감)점 포함 총 60점 이상 선정

항 목		심사내용	배점
정량평가 (40점)	기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 규모(2021년) 20억 이상 20점 / 15억 이상 20억 미만 16점 10억 이상 15억 미만 12점 / 5억 이상 10억 미만 10점 5억 미만 8점 	20
	고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추이(근로자 수 변화) ※ 신청일 ↔ 신청일 1년전 비교 20%이상 증가 20점 / 15%이상 20% 미만 증가 16점 10%이상 15% 미만 증가 12점 / 5%이상 10%미만 증가 8점 0%이상 5%미만 증가 4점 / 감소 0점 	20
정성평가 (60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내용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 	15
	목표 및 달성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달성 가능성 	15
	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전체 및 지원 인력 활용 계획 	15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종료 후 채용유지 및 활용 방안, 기대효과 	15
합 계			100

※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가산점(최대 50점)

- 청년인력 임금 수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원복지수준, 인증기업 해당여부 등에 따른 가산점 부여

※ 별첨1「참여기업 가산점 기준(총괄)」, 별첨2「참여기업 가산점 기준(총괄)」 참조

5) 감점(최대 40점)

항 목		감점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 기간의 2년 초과 기업	10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신청 기업 ※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 참여는 예외 인정	10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 6개월 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발생 기업	10
4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단,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은 참여제한	10

5.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1. 26.(목) ~ 2. 10.(금)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E-mail), 방문(내방) 또는 우편접수
 - 전자우편(E-mail) 제출처 : yoon@koia.or.kr
 - ※ “제출서류” 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방문(내방) 또는 우편 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7층)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정보사업팀(우편번호 : 41494)
 -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신청서류(신청서식 참조) ※ 서식 내 붙임서류 확인 必

연번	신청서류	비 고
1	안광학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	서식 1
2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 1-1
3	총괄사업계획서(A4용지 기준 3매 이내 작성)	서식 1-2
4	기업현황카드	서식 1-3
5	참여기업 가산점 확인서1(직원복지수준)	서식 1-4
6	참여기업 가산점 확인서1(인증기업)	서식 1-5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9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0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내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활용 (보험구분 : 고용보험, '고용상태 : 전체'설정 후 조회) ※ 사이트 주소 : https://total.comwel.or.kr/	[예시 참고]
11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2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 발급)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일	
13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예시】「신청서류 10.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내역」 조회방법



〈 조회방법 〉

- ① <https://total.comwel.or.kr> 접속 및 사업장 로그인 후 상단 [정보조회] 배너 클릭
- ② 보험가입정보 중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클릭
- ③ 보험구분 : 고용, 고용상태 : 전체, 조회기간 최근 1년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6. 유의사항

- 예비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청년인력 채용 및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해지 및 참여제한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청년인력이 1개월 이상 근속(고용보험 취득일기준) 시 채용지원금 지급
 - ※ 지원시작일 : 청년인력 채용일(채용 첫 번째 달은 지원시작일로부터 월말까지 일할계산)
 - ※ 단, 채용일이 휴일이거나 연휴인 경우, 휴일 또는 연휴 후 첫 근무일을 지원시작일로 함
- 청년인력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교육과정(총 15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 주관 네트워킹 행사에 필참
- 청년인력 중도 퇴사시 지원종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기간부터 지원 종료 후 2년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신청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서 접수하지 않음
- 신청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7. 문의처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정보사업팀

○ 윤세진 사원 (☎ 053-350-7855 / yoon@koia.or.kr)

○ 차가영 주임 (☎ 053-350-7859 / diops@koia.or.kr)

- 별첨 1. 참여기업 가산점 기준(총괄) 1부.
2. 참여기업 가산점 기준(인증기업) 1부.
3. 참여기업 제외(감점) 대상 1부.
4. 참여인력 제외 대상 1부.
5. 협약해지, 채용지원금 지급 중단 및 보류 사유 1부.
6. 안광학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서식 각 1부. 끝.

별첨 1

참여기업 가산점 기준(총괄)

○ 가산점 기준 ※ 최대 50점

항 목		가산점	비 고	
임금 수준 (참여청년) ※ 세전기준, 4대보험 사용자(기업) 부담분 제외	1	연봉 2,500만원 이상 2,700만원 미만	2	
	2	연봉 2,700만원 이상 2,900만원 미만	4	
	3	연봉 2,900만원 이상 3,100만원 미만	6	
	4	연봉 3,100만원 이상 3,300만원 미만	8	
	5	연봉 3,3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0	
	6	연봉 3,500만원 이상 3,700만원 미만	12	
	7	연봉 3,700만원 이상 3,900만원 미만	14	
	8	연봉 3,900만원 이상 4,100만원 미만	16	
	9	연봉 4,100만원 이상 4,300만원 미만	18	
	10	연봉 4,300만원 이상	20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공고일 기준	-	3인 이상 기업	10	피보험자 계산 시 사업주, 일용직, 청년인력 채용예정자 제외
직원복지수준 ※ 증빙서류 必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2	항목별 합산, 최대 10점
	2	기숙사 제공	2	
	3	학자금 지원	1	
	4	유연근무제	1	
	5	대부이자지원	1	
	6	중식 제공	1	
	7	명절 기념품(명절상여) 제공	1	
	8	경조사비 지원	1	
	9	하계휴가비 지원	1	
	10	종합건강검진 지원	1	
	11	복지포인트 지급	1	
	12	동호회 지원	1	
	13	포상제도 운영(장기근속, 우수직원 등)	1	
	14	기타 직원복지	1	
인증기업 ※ 증빙서류 必 ※ 별첨 2 「참여기업 가산점 기준(인증기업)」 참조	1	중소기업인대회 대상수상업체(대구시, 2년)	각 1점	항목별 합산, 최대 10점
	2	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대구시, 2년)		
	3	3030지정기업(대구시, 2년)		
	4	Pre스타, 스타기업선정업체(대구시, 지정기간 내)		
	5	올해의 중소기업 수상업체(중기부, 유효기간 내)		
	6	벤처·이노비즈기업 지정업체(중기부, 유효기간 내)		
	7	가족친화기업선정업체(3년)-유효기간 내 가능		
	8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및 신증설 기업(3년)		
	9	지역에코혁신사업 선정업체('18년, '19년)		
	10	프랜차이즈 본점(8개 지점 이상)		
	11	수출기업 및 무역업		
	12	여성기업(3년)-유효기간 내 가능		
	13	장애인기업		
	14	쉬메릭 선정업체(대구시, 2년)		
	15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16	국내복귀기업		
	17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기업('19년, '20년)		
	18	고용증진대상수상기업(고용노동부선정 100대기업, 2년) 고용친화대표기업(대구시) 청년고용증진대상수상기업(대구시, 2년)		
	19	Hustar 프로젝트 참여기업		
	20	마이스터 기술창업, 우수기술 사업화지원(TECH밸리), R&D보증, 지식재산(IP) 평가보증		

별첨 2

참여기업 가산점 기준(인증기업)

○ 인증기업 가산점 기준(각 1점 부여) ※ 단, 증빙서류 제출항목만 인정

연번	대 상 기 업	확인방법	관련부서 혹은 기관
1	중소기업인대회 대상수상업체(대구시, 2년)	지정서 사본	경제정책관(T.803-3394)
2	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대구시, 2년)		일자리노동정책과 (T.803-3384)
3	3030지정기업(대구시, 2년)		경제정책관(T.803-3394)
4	Pre스타, 스타기업선정업체(대구시, 지정기간 내)		경제정책관(T.803-3394)
5	올해의 중소기업 수상업체(중기부, 유효기간 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6	벤처이노비즈기업 지정업체(중기부, 유효기간 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7	가족친화기업선정업체(3년)-유효기간 내 가능		여성가족정책과(T.803-3691)
8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및 신증설 기업(3년)	투자협약서 사본	투자유치과(T.803-6205)
9	지역에코혁신사업 선정업체('18년, '19년)	담당부서 확인서류	기계로봇과(T.803-4692)
10	프랜차이즈 본점(8개 지정 이상)	8개이상 지정 계약서	-
11	수출기업 및 무역업	수출신고서, 신고필증 (관세청, 업체보관), 수출실적증명서	무역협회(T.753-7531)
12	여성기업(3년)-유효기간 내 가능	확인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T.756-0006)
13	장애인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T.600-8070)
14	쉬메릭 선정업체(대구시, 2년)	협약서 사본	섬유패션과(T.803-3362)
15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정서(인증서) 사본	사회적경제과(T.803-6482)
16	국내복귀기업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투자유치과(T.803-6205)
17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기업('19년, '20년)	스마트공장 선정협약서	기계로봇과(T.803-6742)
18	고용증진대상수상기업(고용노동부선정 100대기업, 2년) 고용친화대표기업(대구시) 청년고용증진대상수상기업(대구시, 2년)	지정서 사본	일자리노동정책과 (T.803-3701)
19	Hustar 프로젝트 참여기업	확인서	혁신성장정책과(T.803-3593)
20	마이스터 기술창업, 우수기술 사업화지원(TECH밸리), R&D보증,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접수기관 확인	기술보증기금

※ 무 역 업 : 도소매업종 중 연간 수출액 1억원 이상(접수일 환율 기준)이고, 총 매출액의 10%이상 수출하는 업체

[참여기업 제외 대상]

- (1)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3)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다만,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과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5)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6)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7)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 간 후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 (8)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 23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 가능(기존 채용인력은 잔여기간만 지원)

일자의 성격에 따른 제외대상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참여기업 감점 대상] ※ 각 10점

-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 기간의 2년 초과 기업
- (2) 사업장의 귀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중도포기 발생 기업
- (3)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4)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3개월이내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은 참여기업 제외대상)

[참여인력 제외 대상]

- (1)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3) 공고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청년인력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 (4)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5)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6) 채용예정 기업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7)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중복 또는 반복참여자
 -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8)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 타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9)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인력으로 채용되었던 자
- (10)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11)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시행지침 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해지 사유]

- (1) 서류 보완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한 내 불이행
- (2) 청년인력 운영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3) 지원기간 중 신규 채용인력을 정리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 (4) 해당 청년인력이 퇴사한 경우
- (5)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
- (6) 청년인력이 타 일자리사업이나 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7) 기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지원금 지급중단 사유]

- (1)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채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3) 중도퇴사 등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종료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 (4) 특별한 사유 없이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채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채용지원금 지급보류 사유]

- (1) 고용보험료 미납부액 발생 시 완납 시까지
- (2) 일시적 사유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